24. 12. 16. 오후 2:23 인쇄

실태조사 및 평가

개요	병역지정업체선정	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	편입	복무관리
실태조사 및 평가	군사교육소집	위반시 벌칙 규정		

실태조사 및 평가

관련근거

병역법 제43조

병역법시행령 제93조

전문연구요워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56조 내 제66조

관할지방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의 자율복무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에 대하여 실태조사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음

실태조사 대상

정기실태조사

연 1회 모든 병역지정업체를 대상으로 하되, 아래의 경우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공장단위로 한정되어 있지 않은 분야(건설, 농어업 등)에서 산업기능요원이 의무복무 중인 경우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온라인 실태조사로 대체 가능

특별실태조사: 위반행위 신고 업체 및 민원발생업체 등

농·어업분야: 지방자치단체장(시장·군수·구청장 포함)이 매월 1회 이상 실태조사 실시, 그 결과를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

국외실태조사: 복무기간 중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등 국외여행 중에 있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대상

평가기간 및 배점

기본평가: 전년도 실태조사일 ~ 금년도 실태조사일(매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)

수시평가: 제도 운영 실태 등 가·감점요소 평가(연중)

종합평가: 매년 10월 1일부터 10월 10일(기본평가 + 수시평가)

※ 기본평가 점수는 정기 실태조사 시 평가하고, 기본평가 이후 사항은 다음연도 기본평가시 반영

평가대상 및 방법

대상: 모든 병역지정업체

방법: 종합평가 60점 이상, 종합평가 60점 미만으로 평가

평가결과 적용

종합평가 60점 이상 업체는 다음해 인원배정

상위 10%이내 업체: 인원배정 우대(산업체에 한함)

상위 3%이내 업체 : 「산업지원 병역일터」포털에 모범 병역지정업체 명단 공개 및 경미한 위반사항 '시정' 조치 1회 면책(평가 다음 연도에 한함)

24. 12. 16. 오후 2:23 인쇄

※ 60점 이상 업체의 명단·평가점수를 병역일터 포털에 공개

종합평가 60점 미만 업체는 다음해 인원배정 제한, 명단 공개

제도 운영계획 수립

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, 시행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운영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와 필요인원에 반영 가능

지방병무청 전화번호

지방청	전화번호	지방청	전화번호
서울지방병무청	02-820-4425	충북지방병무청	043-270-1352
부산·울산지방병무청	051-667-5258, 5254(승 선)	전북지방병무청	063-281-3157
대구·경북지방병무청	053-607-6282	경남지방병무청	055-279-9255
경인지방병무청	031-240-7258	제주지방병무청	064-720-3255
광주·전남지방병무청	062-230-4254	인천병무지청	032-454-2283
대전·충남지방병무청	042-250-4453	경기북부병무지청	031-870-0253
강원지방병무청	033-240-6255	강원영동병무지청	033-649-4216